

# 한강낙시 금지구역

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.

## 유어(낙시 등)행위 금지구역(22개)

- 1 **독섬 1지역** : 지양2동 잠실수중보 ~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
- 2 **독섬 2지역** : 청담대교 북단 교량 ~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3 **독섬 3지역** : 서울숲 회전고가시설 ~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4 **이촌 1지역** : 중랑천 합류부 ~ 동호대교 북단 교량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5 **이촌 2지역** :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~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 사이의 전망데크
- 6 **이촌 3지역** : 노들섬 전체,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(거북섬 선착장) ~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호안 및 내수면

- 7 **밤섬지역** : 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 ~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8 **망원 1지역** : 양화대교 북단 교량 ~ 양화대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9 **망원 2지역** :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~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10 **난지 1지역** : 홍제천교 ~ 성산대교 북단 하류 1,300m (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11 **난지 2지역** : 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(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) ~ 가양대교 북단 하류 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(생태습지원 연결한 내수면 포함)

- 12 **잠실지역** : 잠실5동 잠실수중보 ~ 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13 **잠원지역** : 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(리버시티) ~ 한남 대교 남단 하류 1,000m(요트클럽 하류100m)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14 **반포 1지역** :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(전망데크) ~ 하류 500m(임시선착장)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15 **반포 2지역** : 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 (서래섬 하류 100m) ~ 동작대교 남단 하류 200m지점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16 **흑석 지역** :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(원불교회관 앞) ~ 한강 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
- 17 **여의도 1지역** :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~ 서강대교 남단 교량사이의 한강호안및내수면
- 18 **여의도 2지역** : 여의도동 셋강 내수면 전역 (상·하류 합류부 및 연결한 내수면 포함)
- 19 **양화 1지역** :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 (여의도 셋강 하류 합류부) ~ 당산철교 남단 60m(해양소년단 수상훈련장)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20 **양화 2지역** :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(양화선착장) ~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21 **양화3, 강서1 지역** : 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 ~ 마곡철교 남단 하류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
- 22 **강서 2지역** :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~ 개화동 행주대교 상류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
- **한강교량** : 서울특별시내 한강 교량은 낙시금지 구역임
- **한강공원 보행로** : 서울특별시내 한강공원 내 보행로(자전거도로 포함)에서는 유어행위가 금지됨

※금지구역은 총26.56km로서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의 46.5%임.  
( )는한강인접내수면, 수로 등 길이임.



- **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**
  -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 ~ 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중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
  - 서울특별시내 한강 교량
  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 (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동행로 포함)

- **제한하고자 하는 유어행위 제한대상**
  -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낙시행위
  - 지망어업, 투망어업, 연승어업, 정치망어업
  - 수상에서 낙시하는 행위 (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, 낙시 전용공간에서 낙시행위 제외)
  - 떡밥·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낙시행위
  - 훌치기 낙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낙시하는 행위
  -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, 채취하는 행위
  -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
  - 1인당 4대 이상의 낙시대를 사용하는 행위

- **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**
  - 금지행위
    - 금지구역내에서 낙시행위자  
과태료 : 1차 50만, 2차 70만, 3차 100만원
    - 은어포획, 낙시대 4대이상, 갈고리 낙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 
과태료 : 1차 50만, 2차 70만, 3차 100만원
    - 어분,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 
과태료 : 1차 100만, 2차 200만, 3차 300만원
    -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낙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 
과태료 : 1차 10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100만원

- **근거규정**
  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
  - 내수면어업법 제18조

- **기타**
  - 팔당댐 방류량 12,000m³/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낙시행위 금지 및 낙시인 대피명령

— 낙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  
— 낙시 등 유어행위 제한구역  
■ 나들목 ●보도 ○차도 ○보차도